2026년 하반기 서울경제진흥원-기술보증기금 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 지원개요

○ **(목적)** 서울경제진흥원(이하 "SBA") 추천 유망 창업기업에 강화된 금융·비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서울시 창업 생태계 활력 제고

○ **(지원규모)** 10개社 내외

○ **(지원대상)**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중점발굴대상 중소기업

요 건	세부사항	충족시기
① 창 업	창업기업 확인서(제출서류 참조) 통해 확인	접수마감일
② 추 천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접수되어 추천된 기업	1차평가 (추천심사)
③ 기술성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2·3차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최종평가 실시하여 충족여부 판단	최종평가 (기술평가·보증심사)

중점발굴대상 기업

ⓐ **유망업종 영위기업**

-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참고1]
 (AI, Bio, Contents & 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
- 혁신성장산업(제7차 혁신성장 공동기준) 영위기업

ⓑ **기술주도형 스타트업**

- 대학, 연구기관, 대·중견기업 연구소 재직·퇴직자가 창업한 우수 기술기업
- 우수기술 청년창업기업,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기업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투자를 유치한 우수기술기업

□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 법규,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제한(보증금지·제한기업)[참고2]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참고3] 해당 시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참고4] 해당 시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 지원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보증기관**(기보·신보·보증재단) **이용 중인 기업**이 본 공모 신청을 희망할 경우, **기존 이용 중인 보증**을 **전액상환 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구 분		세부 내용
금융 지원	**대상자금**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최대 30억 한도)
	우대사항	▸ **보증비율** : **100%** 적용 ▸ **보증료율** : **0.7% 고정**보증료 ▸ **매출액 기반 자금산정 없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비금융 연계 지원*		▸ **보증연계투자 지원**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 기술 경영컨설팅 등 **전담 코칭** 제공 ▸ 적극적인 **홍보지원** (선정기업, 성공사례 등을 홈페이지, 블로그 게시 등)

* 신청기업에 한해 선별적 지원

□ 선정절차

단 계	주요 내용	일 정	수행
온라인 신청·접수	▸ 스타트업 플러스 홈페이지 접수 (https://mplus.startup-plus.kr)	'26.11.2.(월) ~ '26.11.20.(금) **15시**	SBA
⬇			
1차평가 (추천심사)	▸ 2차 평가 대상기업 추천	'26.11월	
⬇			
2차평가 (요건검토·서면평가)	▸ 3차 평가 대상기업 선정 *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서면평가	'26.11월	기보
⬇			
3차평가 (평가위원단)	▸ 최종평가 대상기업 선정 * 평가위원단이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	'26.12월	
⬇			
최종평가 (기술평가·보증심사)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26.12월	
⬇			
최종선정 및 보증지원	▸ 최종 선정기업 발표 후 보증지원	'26.12월~	

※ 선정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11. 20. (금) 15시 (기한 엄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항 목	세부 내용
신청 방법	▸ **SBA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https://mplus.startup-plus.kr) 접수** * '26. 11. 20.(금) 15:00까지 홈페이지 접수 건에 한함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접수 지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제출 서류 [필수]	① **기술사업계획서[별첨1]** ② **평가 근거자료[별첨2]** ③ **주주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개인기업 제외) ④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2026.10.31. 기준) -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동일하게" 지정하실 것 - <검색기준 2026.10.31.~2026.10.31. 자>로 발급 ⑤ **창업기업 확인서** (cert.k-startup.go.kr에서 발급) - 창업기업 확인 신청 후 발급 시까지 **최대 10일(규정상 기일)**이 소요됨 - 창업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어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 중소기업 확인서 미발급 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신청 필요 - 창업기업 확인서에 한하여 접수마감 후 '26. 11. 27.(금)까지 제출 가능
[선택]	⑥ **IR 발표자료** 혹은 **기업설명자료** (관련자료 보유 기업에 한해 제출)

○ **(의무이행사항) 신청기업**은 보증심사 및 기술평가 등을 위한 **기보**의 추가 **자료제출 요청**(추후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자가진단 사전안내)** K-TOP(기술평가 오픈플랫폼)을 통한 혁신성장역량지수* 평가

*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 기업의 내재적 기술혁신역량 수준을 미래성장성(고성장, 지속가능성장) 관점에서 진단하고 이를 지수화(0~100점)하여 표현하는 평가시스템

구 분	세부 내용
대 상	▸ SBA 추천심사를 통과한 기업
진행시기	▸ **대상기업에 기보에서 별도 통지 예정**
진행방법	▸ K-TOP 홈페이지(www.kibo.or.kr/ktop)에서 자가진단 진행
안내사항	▸ 자가진단을 통해 산출한 혁신성장역량지수를 서면평가에 반영 예정 ▸ 자가진단 대상기업은 별도 통지된 기한 내에 자가진단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 시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기보의 보증지원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담보**(보증서) **제공**을 위한 지원입니다.

○ 공고에 따른 지원내용은 지원시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제출기한 내 접수분**에 한해 인정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기업**으로 분류되어 향후 **보증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선정과정에서의 심사점수나 순위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기술보증기금의 **최종평가**(기술평가·보증심사) **완료 이후 공모 진행**을 **포기**하실 경우, 향후 공모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참고5]의 안내문 참고하시어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으로 인한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접수문의)** 서울경제진흥원 클러스터혁신팀
(02-6958-9073, hkkim@sba.seoul.kr)

○ **(상품문의)** 기술보증기금 서울혁신스타트업팀
(02-3215-5996, istartup@kibo.or.kr)

별첨 1. 기술사업계획서(양식)
2. 평가 근거자료(양식)

참고 1.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상세
2.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
3.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4. 기술보증기금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5.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참고1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상세

6대 분야	22대 세부산업	상세 내용
AI·첨단 네트워크 (AI)	① AI·AX	•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및 AI를 적용하는 산업
	②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데이터 시각화 등 빅데이터 관련 산업
	③ 차세대 모빌리티	• 자율주행, UAM, 스마트카 등 모빌리티 산업
	④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 5G·6G 및 통신인프라, 사물인터넷, 에지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복호화 등 보안·네트워크 산업
	⑤ 양자기술	•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산업
바이오·뷰티 (BIO)	⑥ 레드바이오	• 제약·의료분야 바이오 산업
	⑦ 그린, 화이트바이오	• 농업·식품분야(그린) 및 친환경분야(화이트) 바이오 산업
	⑧ 디지털 헬스케어	• 원격의료, 디지털치료제, AI진단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⑨ 뷰티테크	• 혁신형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등 뷰티테크 산업
문화콘텐츠·서비스·디지털 (Culture, Contents)	⑩ 문화콘텐츠	• K-콘텐츠·컬처,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
	⑪ 혁신형 지식서비스	• 공유경제플랫폼, 핀테크, 스마트물류 시스템 등 혁신형 지식서비스 산업
방산 (Defense)	⑫ 우주항공·해양	• 우주항공(인공위성, 드론 등)·해양(첨단선박, 화물창 등) 관련 산업
	⑬ 첨단 방위산업	• 드론, 지능형무기, 무인무기체계 등 첨단 방위산업
	⑭ 방산기반산업	• 엔진, 추진체, 정밀부품 등 방산기반산업
에너지·환경 (Energy)	⑮ 차세대 원자력	•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산업
	⑯ 신재생에너지	• 수소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⑰ 에너지 인프라	• 차세대 전력망(스마트그리드 등), 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 저장장치, 탄소포집 등 에너지 인프라 산업
첨단제조 (Factory)	⑱ 소재/부품/장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⑲ 로봇	• 정밀제어, 지능형 로봇, AI휴머노이드 등 로봇 관련 산업
	⑳ 차세대 반도체	• AI반도체, 전력반도체, SIC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산업
	㉑ 차세대 디스플레이	• OLED, 마이크로 LED, QNED 등 디스플레이 산업
	㉒ 차세대 배터리	• 이차전지, 리튬황, 흐름전지 등 배터리 관련 산업

참고2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

< 보증금지기업 >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가.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 또는 출자한 자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보증제한기업 >

1. 휴업 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보증브로커 개입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금품제공기업, 부정청탁기업 등
9. 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하되 「보증기업 경영개선지원기준」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
10.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마. 기금이 팩토링 부실처리한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구매기업과 기금이 상환청구권 행사 사유에 해당하여 팩토링 부실처리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판매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제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제12호 기업(마목 제외)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참고3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구 분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11차
도박 게임 관련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 불건전 여부는 도박 해당여부로 판단	3340	3340
	·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	46463, 47640	46463, 47640
	· 도박기계 임대업	69390	76390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75999	75995, 75999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13	91113
	·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91242, 91249
사치 향락 관련	· 주류 및 담배 중개업	46102	46102
	· 귀금속 중개업	46109	46107
	· 주류 및 담배 도소매업	46331, 47221	46331, 47231, 46333, 47232
	· 귀금속 도소매업	46492, 47830	46492, 47830
	· 주점업	5621	5621
	·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3	91223
	· 무도장 운영업	91291	91291
	· 마사지업	96122	96122
부동산 관련	·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1	68111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1	68121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68221, 68222	68221, 68222
기타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59142	59142
	· 전화방	91229	91229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41	91241
	·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	96992	96992

참고4 기술보증기금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구 분	세부항목
결격요건 (1개라도 "부"인 경우 보증지원 불가)	①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경영자 본인이 최대 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임 ※ 다만, 실제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충족으로 심사
	② 실제경영자가(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금융질서문란,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
	③ 실제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
	④ 실제경영자(본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포함)가 최근 2년 이내 보증부대출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

참고5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 (인터넷)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https://www.kibo.or.kr/main)
 (경로: 고객마당 > 반부패신고센터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전 화) 051-606-7551, 051-606-7563, 051-606-7568